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이해

정 윤 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1.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배경

1) 연금재정의 문제

그동안 공무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 온 연금제도는 부담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미 지난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5년과 2000년도에 제도개혁을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재정은 취약한 상황이고, 이미 '01년도 부터 연금지출액이 기여금 수입을 초과,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보전금을 충당할 경우 불과 2~3년 후에는 모두 바닥나는 수준이다.

※ 공무원 연금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수 입 (기여금+부담금)	29,072	34,296	36,521	39,085	40,935	44,076	58,162
지 출	29,671	30,520	37,069	40,827	47,031	50,553	68,054
부 족 액	599	-	548	1,742	6,096	6,477	9,892
적립기금	20,896	27,276	30,675	33,218	38,295	42,229	48,043

수입항목의 기여금은 재직공무원이 내는 연금부담금이고 부담금은 정부(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다. 공무원과 정부는 각각 보수월액의 8.5%를 연금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물론 지출은 퇴직한 연금수급자에게 급여로서 제공하는 부분인데, 수급자수의 증가로 재정지출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개혁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기여금 수입이,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지출액보다 부족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정부보전액은 2010년 2~2.2조원, 2020년 9~11조원, 2030년 18~25조원 규모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금이 총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 나라와 여건이 비슷해지는 30~40년 후에는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연금제도 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 연금재정 적자의 원인

1) 재직자는 일정수준 유지,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1960년 제도가 도입되어 5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현직 공무원의 수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이 재정적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수는 1982년 66만 7천명에서 2005년 95만 7천명, 2007년 102만 1천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연금수급자 수는 1992년 3만 4천명, 2005년 21만 8천명, 2007년 25만 3천명 등으로 증가속도의 차이가 크다.

한편, 최근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져 연금재정지출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균수명 추이를 보면 1960년 52세, 1981년 66세, 2005년 77.46세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향후 2030년에는 82세로 예상하고 있다.

2) 비용부담액이 연금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구조를 장기간 유지

연금재정 적자는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받아가는 불균형적인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과거정부에서부터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금부담률 인상보다 큰 폭으로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은행 이자가 낮아지고,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연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퇴직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연금선택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금선택율은 1985년 30.5%, 1990년 50%, 2000년 78%, 2007년 93.5%로 최근 들어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25~3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정도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역할

공무원연금재정의 적자 원인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1) 연금기금은 보수적 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수익성도 고려

공적연금기금은 안전성,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것은 공적연금이 제도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았고, 공단창설 이후 지금까지 적자 없이 투자수익률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2) 최근 5년간 8.4%의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을 거두고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03년부터 '07년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17,084억원의 수익(투자수익률 8.4%)을 얻은 바 있으며, 주식투자의 경우 저평가 된 종목을 집중 발굴하여 '07년 한해 동안 34.6%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3) 3대 대형 연기금 중 공단 수익률이 가장 좋아

공단은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상품 발굴과 안정적인 운용으로 '00년 17,752억원이었던 기금을 '07년 48,043억원으로 크게 확대시켰으며, 3대 대형 연기금 수익률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구 분	'05	'06	'07
공무원연금	11.9%	7.4%	9.3%
A 연금	5.6%	5.8%	6.8%
B 연금	9.4%	5.6%	10.2%

※ '05년, '06년 기금운용평가에서 자산운용부문 2년 연속 1위 달성

4) 후생 복지사업에도 투자하여 높은 수익성을 거두고 있음

주택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사업개시 이후 분양주택은 17.3%, 임대주택은 13.6%의 수익을 올렸고,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이용 공무원들에게 할인을 통하여 사업개시 이후 총 3,864억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천안상록리조트 및 화성상록골프장에서 각각 109억원, 63억원의 당기순이익('07년)을 달성하였다.

천안상록리조트는 1997년 3월 개장하였고, 화성상록골프장은 2006년 11월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주요 의문점

1) 연금제도가 개정되어 연금이 줄어들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

최근 언론 등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통해 연금개혁을 하면 종전기간까지 소급 적용되어 연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은 앞으로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지금까지 재직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해 연금을 보장할 것이다.

즉, 향후 누적될 연금에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연금액이 200만원이라면 개혁후에도 최소한 200만원은 보장되고 추가 근무하는 기간 만큼 개혁된 내용이 적용되어 증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재 조건은 1년 더 근무하면 20만원 더 받아 220만원을 받게 될 것을 개혁을 하면 한 215만원 정도로 증가된다는 것으로 증가되는 폭이 좀 줄어들 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종전의 누적분은 보장이 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이 걱정되어 퇴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다.

참고로 명예퇴직수당은 연금과 별개의 제도로서 연금개혁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현 단계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가능성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의 개편방향으로 양제도간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입목적과, 가입대상, 운영방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제도를 무리하게 통합할 때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할 있으며, 더욱이 현 단계에서 그것이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다.

3) 연금개혁 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 하는 것이다.

당초 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20년 이상 재직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였으나, 연금재정문제가 심각해지자 '95년과 '00년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 퇴직을 하더라도 60세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이를 다시 65세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연금지급개시연령】

- '96년 이후 임용자 : 60세
- '95년 이전 임용자
 - '00년말 현재 20년 이상 재직자 : 퇴직시 즉시 지급
 - '00년말 현재 20년 이상 재직자 : 단계적으로 연장
50세('01) → (2년에 1세씩 연장) → 60세('21) * '08년 퇴직자 53세

그러나 65세로 늘어난다고 하여 곧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이행기간을 설정할 것이므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2022년까지는 현행 지급개시연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릴 계획이다.

5.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의 추진일정

1)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개선방안을 마련중

공무원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전문가·정부대표·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정책건의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발표 후 국민연금이 당초 “더 내고 덜 받는”안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안으로 바뀌면서, 공무원연금도 기존의 정책건의안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 하였다.

2) 졸속이 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후에 추진

연금재정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하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이들 모두가 상호 소통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발전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조속히 연금제도 개선안이 마무리 되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